	등록번호	2019108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THE LAST BEEF #4	최초등록일	2019.10.23	
LAOI DLLI ET	최종등록일	2024.07.11	



# 정보공개서

㈜에프씨봉대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에프씨봉대박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 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T. 1600-0920 / F. 053-955-0928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053-955-0920]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 2. 가맹사업 연혁
- 3.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 5. 기타 가맹사업 현황
-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 8. 광고·판촉지출 내역
- 9. 가맹금 예치기관
- 10.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영업지역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 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 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 부에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 보 공 개 사 항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	표지	2	두 소
	끝소 외 4개		대구광역시 북구 [	대학로 23 길 7-2, 3 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	전화번호 및 팩스
㈜에프씨 봉대박	2013.01.08	2013.02.01	이채환	T. 1600-0920
0411				F. 053-955-0928
	법인	170111-	사업자	504-86-03819
	등록번호	0481440	등록번호	304 00 00013

● 당사는 현재『끝소』가맹사업 외 『봉대박스파게티』『봉대박찜닭』『끝돈』『봉대박파스 타&찜닭』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슬로그릴』『보리봉치킨』 가맹사업은 2023 년 04월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11.001	이채환	끝소 외 4개	대구광역시 특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사용인 (대표)	/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4111)	201	3.02.01 ~ 현재	이채환	T. 1600-0920
관계	이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명진 끝소 외 4 개		대구광역시 특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감사)	)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1			
	2024. 03. 05.~ 현재	이채환	T. 1600-092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끝소	없 음
상 호	끝소 OO 점	없 음
상표 (서비스표)	THE LAST BEEF <sub>溫소</sub>	등록번호 4013551920000

#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329,728	660,775	-331,047	123,733	-121,035	-115,353
2022	347,784	798,230	-450,445	375,225	-137,489	-119,398
2023	269,953	549,565	-279,611	629,953	47,533	170,834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영업표지『구슬로그릴』,『보리봉치킨』 가맹사업은 2023년 04월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이름	사업경력 이름 현 직위			
여부	VI 🗖	E 771	기간	사업체 명	담당 업무
	01 = 11 = 1		2009.04 ~ 2013.01.13	FC 봉대박 대표	회사 경영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채환	대표이사	2013.01.08~ 현재	(주)에프씨봉대박 대표이사	회사 경영 총괄
	이명진	감사	2024. 03. 05. 현재	(주)에프씨봉대박 감사	회사 내부 감사

####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윤	!수(명)	직원 수(명)
/I &	상근	비상근	역면 구(8 <i>)</i>
2023년 12월 31일	2	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 『끝소』가맹사업 외의 다음 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사업 경영	2009.04.25 ~현재	봉대박스파게티 (등록번호:20090600054)이라는 영업표지의 스파게티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5.12.18 ~현재	봉대박찜닭 (등록번호:2015124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2.05 ~현재	봉대박파스타&찜닭 (등록번호:20190752)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경영		
가맹 본부	㈜에프씨 봉대박			가맹사업 경영	2017.10.10 ~현재	끝돈 (등록번호: 20180960)이라는 영업표지의 돼지고기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보리봉치킨 (등록번호:20212373)이라는 영업표 지의 치킨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구슬로그릴(등록번호:20212195)이라 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구슬로 양대창(등록번호:20211928)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 구슬로양대창은 2022 년, 구슬로그릴,보리봉치킨은 2023 년 4 월경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 끝소 』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THE JACK LAST BEEF #4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출원일 2017.06.10 등록일 2018.04.30	출원번호 4020170071185 등록번호 4013551920000	이채환	2028 년 04 월 30 일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2019.05.05

● 상기 일은 당사 직원이 운영하는 "끝소"의 영업시작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2.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끝소』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에프씨 봉대박	끝소	이채환	2019.05.05 ~2022.05.15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113 (산격동, 3층전부)
㈜에프씨 봉대박	끝소	이채환	2022.05.16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23길 7-2, 3층

# 3.[끝소] 업종

영업표지	업종		
77 . A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끝소 - -	한식	소고기	

###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 끝소 』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2	2	_	2	2-	_	2	2	_
서울	_	_	_	_	_	-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2	2	_	2	2-	_	2	2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	_	-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	_	_	_	_	_	_	_	_
충북	-	_	_	_	_	_	_	-	_
충남	-	_	_	_	_	-	_	-	_
전북	-	_	_	_	_	_	_	_	_
전남	-	_	_	_	_	-	_	-	_
경북	-	_	_	_	_	_	_	_	_
경남	-	_	_	_	_	-	_	-	_
제주	-	_	_	-	_	-	_	_	_

# 5. 바로 전 3개년도 말 『 끝소 』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0	0	0	0	2
2022	2	0	0	0	0	2
2023	2	0	0	0	0	2

#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끝소』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AL =	молл	정보공개서	۵A	가맹점	/직영점의 수 (	단위: 개)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봉대박 스파게티	20090600054	스파게티 전문점	24/0	22/0	21/0
	봉대박찜닭	20151243	찜닭 및 치킨	3/0	3/0	3/0
끝	끝돈	20180960	돼지고기 전문점	2/0	6/0	10/0
㈜에프씨 봉대박	봉대박파스타 &찜닭	20190752	파스타,찜닭 전문점	10/0	6/0	5/0
	보리봉치킨	보리봉치킨 20212373		0/0	0/0	0/0
	구슬로그릴	20212195	한식	0/0	0/1	0/0
	구슬로 양대창	20211928	한식	0/1	0/0	0/0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당사의 『끝소』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평균 매출액							
2023년말 지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71007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2	해당없음			5 곳 미만
서울	_	해당없음			5 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2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	2	1464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스타 기: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нг
70 70	구근	구한 기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11
광고	(비공개)	_	-	-	_	_

● 당사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용으로 당사의 가맹사업 『끝소』 『봉대박 파스타 & 찜닭』『봉대박스파게티』,『봉대박찜닭』『끝돈』 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이며 각 가맹사업별 광고판촉비용의 구분이 용이 하지 않습니다. 작년기준 『끝소』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해당사항 이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방촌점	대구시 동구 방촌동 911-7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 후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kbstar.com )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88-999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 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끝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비용	반환시 당사 에서 정한 기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준의 위약금 을 공제
마케팅비	₩2,200	계약 체결일	홍보 개시 이전 계약 해지	홍보가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하트하트그릴	3,000	계약	하트하트불판 시스템	계약시 따로
시스템 보증금		체결일	사용 보증금	렌탈 계약서 작성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행담보목적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변경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종금의 반환시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21,7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마케팅비 ₩2,200

그릴 및 화로시스템 보증금 ₩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기준			99	㎡(30평)기준		
[총 계]		[123,980]				
인테리어 (점포 공사, 덕트)	(협력업체)	56,100	1,87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현장실측에 따라 금액변동 (평당 1,870 천원)
특수조명	(협력업체)	2,20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 변동
간판	(협력업체)	5,00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설비, 기자재, 집기류	(협력업체)	49,50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덕트,테이블, 냉장고,냉동고, 주방 및 홀 그릇 류 등
하트하트그 릴 렌탈	가맹본부	2,640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40 장 기준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초도 식재료, 물품	(협력업체)	2,000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식자재,기타 물 품등
초도 물품비	가맹본부	5,000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유니폼,메뉴판,기 타물품 등
POS 기계 구매	(협력업체)	1,54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의 3.3 m² 당 가격은 대략 187만원(부가세포함)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변동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협력업체포함)에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귀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의 승인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하며, 이의비용으로 당사에 3.3 ㎡당 44 만원(부가세포함) 감리(관리감독)비를 지급하여 합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샤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전기증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 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외부화장실 등의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50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100만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150만원
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
	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
	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자가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끝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메뉴 또는 본사 경영방침의 변경, 시장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위 공급원·부자재의 종류, 단위 및 가격은 추가 또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9) 당사는 가맹금의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받지 아니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เมว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카드매 출액의 2.2%	매익월5일	반환불가	실비	CMS 자동 출금동의 (미출금시 25일 재출금요청)
바나나 프로그램	(협력업체)	33	협의	반환불가	실비	단, 홀 전용 제외 배달매장의 경우 해당
화이트세스코	(협력업체)	30평~40평 이하 115,500원 40평~60평 이하 148,500원 60평~100 평이하 181,600원	협의	반환불가	실비	
점포환경 개선	미지정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주와 협의 산 정	교육실시 7 일전	교육 실시 1일전 취소	교육 후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 판변경 비용	해당 없음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인데리어-> (협력업체) 시설,각종기기 의 교체/보수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시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 구연수 등을 감안 하여 당사와 협의 하여 결정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내용은 (V-9-1)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 시 부담.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보장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급액의 비율	해당사항없음

- 끝소는 특수관계인(호파랑푸드시스템)을 통해 물류를 공급하여 차액가맹금이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부정기	문의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1600-0920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요청시	문의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600-092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미실시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재고조사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 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 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3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3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끝소』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끝소』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 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 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끝소』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 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 방을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끝소 가맹사업과 관련한 원부재료는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 끝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명칭	관계	경제적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천원)	비고
호파랑푸드 시스템㈜	계열회사	(비공개)	-	=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 1) 당사는 『끝소』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 단, 인테리어 공사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소』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 2) 당사가 『 끝소 』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뚱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	-------	--------------	---------	----

1회 위반: 구두 경고 1)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당사로부터 2 회 위반: 가맹본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승인을 받 서면시정요구 후 2)당사가 제공한 조리기준에 은 경우에 제공상품 일체 가맹점운영권제한 따라 제공할 것 는 제외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통신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 상품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 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타 가맹사업자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물품, 용역	공급 및 판매 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2차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계약 해지	_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IE OWN	권장가격	가격 통보	
상품 · 용역명	(단위: 원)	방법	비고
황제늑간 야끼니쿠 300g	45,000		
안창살 야끼니쿠 300g	48,000		
와규오마카세 300g	49,000		
스페셜 오마카세 케익(1단)	89,000		
스페셜 오마카세 케익(2단)	119,000		
스페셜 오마카세 케익(3단)	149,000		
치마살 100g	13,000		
삼각살 100g	14,000		
황제늑간살 100g	15,000		
샤또브리앙 100g	15,000		
설화살 100g	18,000		
안창살 100g	16,000		
소막창 100g	10,000	전자우편 (계절 및 지 상황에 Œ 통지	2024.04 월 기준
소대창 100g	11,000		(계절 및 지역적
우설 100g	12,000		상황에 따라
소곱창 100g	12,000		변동될 수 있음)
육회	19,000		
소고기미역국	5,000		
빨간양념오뎅	6,000		
김치말이국수	7,000		
단무지비빔국수	7,000원		
얼큰순두부찌개	9,000원		
소고기된장찌개	4,000		
꽈리고추(10p)	2,000		
새송이버섯(추가)	1,000		
구워먹는 소시지(6p)	5,000		
구워먹는 치즈(6p)	4,000		
구워먹는 명란	6,000		

생와사비 초밥(8p)	4,000
고시히까리 공깃밥	2,000
탄산음료	2,000
주류	_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에 통신 및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0ec 80 071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끝소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500 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 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역사(기차,지하철)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끝소』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국니	#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5
연도	<b>변도</b>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없음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끝소』 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 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 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 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호1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 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2회이상 연체한 경 우	15 조 1 항내지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개월에 걸쳐 3회 이 상 지체하는 경우	15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 입한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	27 조 7 항
지정된 PO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정보 및 기타 정보를 누락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30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3 항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S/V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 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별첨 4. "QCS 평가기준미달 및 교육불참 가맹 점에 대한 조치 기준"참조)	25 조 15

가맹본부가 정한 제품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 매뉴얼 규정을 위 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16
가맹점이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유통기한을 넘긴 물 품을 보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17
가맹본부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불량, 슬리퍼 착용금지 등) 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18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담당 S/V가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확인을 못한 경우	25 조 19
광고물 제작 시 가맹본부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20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별첨 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참조)	25 조 21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2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mark>일</mark> 이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 1년(계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mark>가</mark>맹점

별 천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나"항과 하기 "다"항의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중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참조)
  - 1. 이물질, 혐오물질을 투입•혼입하거나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사용, 보관,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발생한 경우
  - 2. 고의에 의한 유해물질 투입·혼입 행위로 소비자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 킬 염려가 발생한 경우
-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각호 1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	31조 2항
하는 경우	각호1

-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제공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문의:
가맹점 운영 기준을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준수할 것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맹점	1600-0920
	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 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_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끝소』 와 동 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 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끝소』와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소고기전문점	국내 전 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 1600-0920)

●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끝소』 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끝소』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17:00~02:00 권장)	월 25일 이상	문의: 1600-09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ИЗ
3 명 이상 [99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별첨 5. "QCS 평가서"참조)

관리 감독 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식 자 재 (3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사입여부, 보관상태, 유통기한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조리, 상품, 서비스 (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서비스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매장 별 반기1회 이상
시 설 기 구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조리기구 보관 및 청결상태 확 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 명 → 완료	수시방문
개인(청결)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개인위생 및 복장 청결상태 확 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 명 → 완료	(고객지원팀 S/V)
환경(매장청결)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 내.외부 청결상태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끝소』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니	부 담 비 율		비다 저귀	шп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미끄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행사 계획 공 고 → 광고실 시 1 개월전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 점의 행사 참 여 결정 → 광 고실시 2 주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전체 광고행 사에 참여하 여야 함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까지 광고비 납부	
판촉행사	전체행사	(가맹본	따라 차등 부와 가맹점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30%이상 반 대 시 미 시 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갑"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숲일천만원 (₩1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갑"이 지불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⑥ "갑"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60일 내외	IV. 가맹점사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600-0920)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60	업자의 부담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D-59	중 1. 영업개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 이전의 부
점포 개발	<ul><li>점포입지 선정</li><li>점포개발 착수</li><li>상권분석</li></ul>	필요 시 실시	담 1) ~4)를 참고하시기 바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랍니다.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44	
점포실측/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43	
도면 작성 및 인테리 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42~2	
교육	- 교육(개점 전 교육)	D-32~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 및 식자재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후로 단축되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절차			
1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전(정보공개서 14일전, 가맹계약서 14일전까지)에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선택방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or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3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4	자문확인서 수령 (14일->7일 단축희망 시)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or 변호사 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ol> <li>접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ol>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10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8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지급절차	<ul><li>&gt;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li></ul>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 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 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명지도 후 [30]일 이내에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당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테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	주요	지원	지원	지원	비고
정책	내용	조건	기간	내용	
해당사항없음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하 였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효율적인 『끝소』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분 주요내용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방법,	이론,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조리 및 메뉴 교		조리 및 메뉴 교육, 접객방법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교육			
	A 11 70	신 메뉴 및 서비스강화	실습 및	1 일(2~4h)	비정기적
	수시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강의교육	T = (2~4H)	필수교육
	특별 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1 일(2~4h)	가맹점주

강의교육

요청 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끝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0 일 ( 120h~200h)	550 만원	최초 계약 시 이수 (1일 최소4시간이상 교육)	
수시 교육	1 일(2~4h)	실습 및 강의교육	비정기적 필수교육	
특별 교육	1 일(2~4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및 해지 사유,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_	_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239~421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 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재무제표 현황** 2022~2021

#### 2022~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 2] 초도물품 및 식재료 LIST

1. 초도 물품 List (2024년 4월 현재) \*공급업체-가맹본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식자재 List (2024 년 4 월현재) \*공급업체-호파랑푸드시스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필수(강제)품목 LIST]

	`	
	- 60 -	

•

# [별첨3]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 [별첨4]

# QCS 평가기준미달 및 교육불참 가맹점에 대한 조치 기준

[별첨5]

QCS 평가서 (점)

# [별첨 6]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